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번호	2378

제출일자 : 2023. 9. 5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나. 기금의 설치, 조성, 존속기한(안 제2조부터 제4조)

다. 기금의 용도,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(안 제5조부터 제7조)

라.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8조)

마.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9조 및 제10조)

바. 위원회의 운영 등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3조, 제14조

3)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, 제15조, 제18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고

다. 합의기관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8. 1. ~ 2023. 8. 21.) 결과: 의견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3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
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
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
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종전의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」에 따라 적립된 기금
2.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
3.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
4. 기금의 운용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 등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어르신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업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(이하 “보린주택”이라 한다) 입주 예정자의 입주보증금 융자
2.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지정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한다.

제8조(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1. 기금업무 담당 과장
2. 금융 및 융자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주거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
2.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제10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

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,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.

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 등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되, 그 일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이입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」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,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보린주택 현황 : 1~6호점, 97세대

○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현황 : 68세대 621,603천원(23.07.25. 기준)

○ 신규 융자 신청 : 207,200천원(20세대 × 평균 입주보증금의 90% 10,360천원)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」에 따라 적립된 기금
2.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
3.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
4. 기금의 운용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 등

2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기금조성 목표액 : 8.89억

○ 비용추계기간 : 5년

※ 총 기금조성 목표액 : 8.89억 ⇒ 5년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 가능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세입	기 금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000
	소계(a)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**889,000**
세출	기 금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	소계(b)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**889,000**
□총 비용(a-b)		-	-	-	-	-	-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 년도	2차 년도	3차 년도	4차 년도	5차 년도	계
구 비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 세입·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지원과 자활주거팀 김동주
연 락 처	2627 - 1981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5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, 2020. 1. 29., 2021. 1. 12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주거기본법

[시행 2022. 6. 8.] [법률 제18561호, 2021. 12. 7., 일부개정]
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 23.>

1. 소득수준·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"주거지원필요계층"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
3.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,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

4.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
5.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6. 주거환경 정비,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
7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8. 저출산·고령화,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9.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

제15조(주거비 보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·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